

# 오스트리아식 영세중립화 통일방안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에 대한 재고

박수희 서울대학교

## 논문요약

오스트리아와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강대국들에 의해 분단되었다는 과정상의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통일과 분단이라는 상반된 상황으로 진행되어 왔기에, 오스트리아식 영세중립화 통일방안은 국내 통일 연구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고려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 연구들이 제시하는 오스트리아식 영세중립화 통일방안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은 *어떻게* 오스트리아가 영세중립국으로 통일을 이뤘는지 과정을 중심으로 다루지만, *왜* 영세중립화 정책을 택하게 됐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본고는 1955년 냉전 시기 오스트리아가 영세중립화 통일방안을 정책으로 택하게 된 이유를 미 국무부 외교문서와 미 중앙정보부 문서에 기초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오스트리아식 방안은 단순한 영세중립화 정책이 아니라, 냉전 시기 오스트리아에 국한되어 강대국들에 의해 적용된 정책이기에, 동일한 방안을 한반도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심층적인 재고가 요구되어짐을 논하고자 한다.

주제어 : 한국, 오스트리아, 영세중립화, 통일, 분할점령

## I. 서론

오스트리아와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강대국들에 의해 분단되었다는 과정상의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통일과 분단이라는 상반된 상황으로 진행되어 왔기에 오스트리아의 통일사례는 국내 통일 연구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고려되어 왔다. 특히, 오스트리아가 추진했던 영세중립화 통일은 한반도 통일의 모범적 사례이자 정책 모델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다(이경 2020, 208). 이는 한반도와 가장 유사하게 추축국에 병합되었다가, 전쟁의 종식과 함께 독립되고 연합국의 분할점령을 거쳐 1955년 통일을 이룬 선례이기 때문이다(박정원 2007, 88).

최근의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리고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영세중립화 통일방안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한반도 중립화 및 오스트리아식 영세중립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학계에 제안되는 한편(박태균 2019; 김홍섭 2020), 강종일 한반도중립화연구소장은, 2018년 한 인터뷰에서 “한반도 중립화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영세중립”(서울신문 18/05/15)을 주장하면서 오스트리아 사례를 언급한바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국내 연구들이 제시하는 오스트리아식 영세중립화 통일방안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을 분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는, 국내 오스트리아 통일 사례 연구들은 *어떻게* 영세중립국으로 통일을 이뤘는지에 대해 분단과정과 협상과정 중심의 논의가 주를 이뤘다(김홍섭 2020, 208). 그러나, *왜* 오스트리아가 영세중립화를 택하게 됐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오스트리아 분할점령 및 통일에 대한 4강의 협상 과정과 정책 입안과정을 기록한 미 국무부 외교문서와 CIA 문서 원문을 분석하여 왜 영세중립화 통일방안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보았다<sup>1)</sup>. 이를 통해 오스트리아식 방안은 단순한 영세중립화 정책

1) 분석 자료는 기존 국내 연구에 활용되지 않았던 미 국무부 외교자료 원문(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미 국무부 회보 원문

이 아니며, 냉전 시기 오스트리아에 국한되어 강대국들에 의해 적용된 정책이기에 같은 방안을 한반도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심층적인 재고가 요구되어짐을 논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국제법상 영세중립화 통일이 가지는 의미와 한반도 중립화 가능성의 한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II. 기존 연구의 특징과 한계

최근 국내의 오스트리아 통일사례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역사적 진행과정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김홍섭 2020, 208). 기존 연구들은 주로 1945년 분단이 시작된 시점과 1955년 통일을 이룬 시점 사이에 추진된 일련의 외교적 협상과정을 연대순으로 분석한다(김홍섭 2020; 박정원 2007; 이경 2011; 정미영 2010). 단지 특이점은, 그 서술이 어떻게 외교적 난관을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국가조약을 서명하였는가에 대한 거시적 관점에서 역사적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김홍섭 2020, 208). 특히, 국가조약 서명 한 달여 전인 1955년 4월, 모스크바 선언을 통해 오스트리아가 소련과 합의하고 4강들에게 관철시킨 영세중립화 정책이 바로 통일을 성립시킨 핵심 요인으로 제시된다(박정원 2007, 89; 이경 2011, 25). 그리고, 그와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한반도의 통일방향에 주는 긍정적 교훈 또는 함의로 귀결시킨다(정미영 2010, 268).

또한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오스트리아식 영세중립화 통일방안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첫째는 양국의 근대사적 유사성이며, 둘째는 양국의 대조적 통일 정책이다. 첫 번째, 양국의 근대사적 유사성이라 함은, 양국이 추축국에게 병합되는 과정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되고 다시 분할 점령되는 방식의 유사성이다. 국내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 내용을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및 CIA 정보보고서 원문(Current Intelligence Bulletin)을 활용하였다.

유사점으로 서술한다: (1) 1910년 한국이 강제 병합되고 강제 동원되었듯이, 오스트리아는 독일과의 병합 이후 제2차 세계대전에 동원되었다(김홍섭 2020, 209). (2) 한국이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종전 후 독립국 지위를 보장 받았듯이, 오스트리아도 1943년 모스크바 3상회담 선언으로 종전 후 독립국가의 지위의 회복을 보장받았다. 그리고 1945년 포츠담 회담에서 분할 점령이 결정된다(박정원 2007, 88). (3) 1945년 독립 후 한국이 미국과 소련의 의해 민주-공산 진영으로 분할 점령되었듯이, 오스트리아도 분할되어 연합국의 점령을 받게 된다. 오스트리아는 미국, 영국, 프랑스가 분할 점령한 민주진영과 소련이 점령한 공산진영으로 양분 된다(이경 2011, 66-67).

두 번째는, 양국이 분할 점령 후 실행한 대조적 통일정책으로 인해 통일과 분단이라는 반대의 결과가 있었다는 논이다(정미영 2010, 266). 국내의 연구들은 분할점령이 시작된 후 양국에서 일어난 대조적인 통일정책과 노력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비교하고 있다: (1) 오스트리아는 이데올로기와 상관없이 좌우합작의 단일 연립정부를 수립하여 합법 정부로 4강의 승인을 이뤄냈다(이경 2011, 66) (2) 10년간의 단일화된 외교적 노력과 영세중립화 통일방안이라는 민주-공산진영 및 오스트리아 국민 모두가 납득 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냄으로서, 결국 통일을 이뤄낸 모범적인 국가이다(박정원 2007, 89). (3) 반대로 한국은 이데올로기로 인해 분열되고 남북에 각각 미-소 군정이 지원하는 정부를 수립하고 통일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기에 1950년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고 분단되었다(정미영 2010, 257). 요약하자면, 오스트리아가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하여 1955년 당시 유럽의 미-소 냉전 상황 속에 얽힌 자국의 문제를 영세중립화라는 절묘한 정책으로 풀어내어 통일을 이룬 국가적 노력에 중점을 둔다. 그렇기에 오스트리아와 비슷한 배경으로 분단된 우리도 약소국으로서의 지위와 지정학적 위치를 볼 때, 오스트리아식 영세중립화 전략은 통일 추진 정책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정미영 2010, 266).

위와 같이, 국내의 오스트리아 통일 사례 연구들은 *어떻게* 오스트리

아가 영세중립국으로 통일을 이뤘는지에 대해 과정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그러나, 이 모든 논의 속에서 *왜* 오스트리아가 영세중립화를 선택하였으며 통일을 위한 다른 대안은 없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았다.

### III. 오스트리아의 중립화가 선택되는 과정:

#### 왜 영세중립화를 선택했는가?

##### 1.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의 결정 과정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이 오스트리아 및 독일의 패전으로 끝나자 1919년 생제르맹 조약으로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는 해체되었다. 생제르맹 조약 체결 전, 오스트리아 임시정부는 헌법을 작성하고 헌법 제1조에 국명을 “독일-오스트리아”라 명명하고 헌법 제2조에 “독일-오스트리아는” 독일 공화국의 일부라(Steininger 2002, 87) 명시하며 독일과의 병합(Anschluß)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오스트리아 임시정부는 전쟁 패배로 인한 경제난국의 해결은 같은 민족인 독일과의 병합이 유일한 방안이라 판단하고, 심지어 독일 정부에 병합을 직접 요청하기도 하였다(Steininger 2002, 87). 그러나, 승전국들의 반대와 생제르맹 조약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병합이 금지되자, 국명에서 “독일”을 삭제하고 “오스트리아”라 명명한 후 제1공화국 정부는 출범하였다(Steininger 2002, 90-91). 그 후에도 오스트리아의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과 병합을 주장하는 논의와 세력이 꾸준히 존재하였다. 1938년에는 병합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정권을 잡으며 국민투표를 거쳐 독일과 공식 병합되고 오스트리아는 나치 독일의 일부로 제2차 세계대전에 가담한다(Steininger 2002, 90-91).

1943년, 독일의 전력이 약화하기 시작하면서 전세가 기울어짐에 따라 미국과 영국은 전쟁의 빠른 종식과 패전국의 처우에 대한 정책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특히, 영국은 유럽 재건을 위해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유럽 지역연합을 구상했다(Perkins et al. 1966, 719). 그리고, 유럽의 중부, 남부, 동부지역의 교차점에 위치한 오스트리아의 지리적 특성상 다시 주권국이 된 후 안정적 경제주체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대책이 주요 정책으로 입안되었다(Perkins et al. 1966, 719). 1943년 10월 모스크바 3상회담과 11월 카이로회담 준비기간 동안 오스트리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다. 오스트리아 독립을 추진하는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고민은 동 기간 미 국무부에서 작성된 3가지 공식 문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43년 발행된 세 가지 미 국무부 외교문건은, 주미 영국대사관을 통해 전달된 8월 비망록과(Franklin et al. 1963, 957) 미 국무부가 주미 영국대사관에 회신한 10월 비망록(Franklin et al. 1963, 1014), 그리고 10월 모스크바 3상회담 비밀 의정서의 “오스트리아에 대한 선언문”이라는 제목의 제6부속서(Franklin et al. 1963, 1354) 이다. 이 문건들은 1943년 5월 워싱턴 회담(미국, 영국 정상회담)과 11월 카이로 회담(미국, 영국, 소련 정상회담) 사이에 작성되었으며 모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938년 3월 15일 오스트리아는 독일 침략에 첫 희생된 국가로 대서양 현장의 자치 권리권을 박탈당했기에 병합이 무효이며[···] 오스트리아가 독립국가로 복원될 것을 희망한다. 그러나 오스트리아는 히틀러 독일 편에 서서 전쟁에 가담한 것에 대한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이 있으며, 최종 합의에서는 스스로 자유를 위해 기여한 노력에 대한 고려가 불가피할 것이다”(Franklin et al. 1963, 957).

이 내용은 1943년 8월 영국에서 미국으로 전달한 비망록에 첨부된 “오스트리아의 미래” 라는 제목의 영국 정책문서의 핵심 내용이자 같이 첨부된 카이로 회담 선언문 초안의 기본 정책방향이다. 위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오스트리아 독립 관련 정책은 모스크바 3상회담과 카이로 회담 이후 연합국의 유럽 재건 정책의 기본 방침 중 하나가 된다. 이후, 1955년 오스트리아 국가조약 서문에 포함되기 까지 오스트리아를

논의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기본 표현이 된다. 미국은 동일 맥락을 담은 입장을 1946년 미 국무부 공보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힌다. “미국은 병합을 인정한적 없기에[···] 오스트리아를 적국으로 보거나 서로 전쟁 중으로 보지 않았으며[···] 뉴른버그 군사재판의 결정대로 1938년 독일에 침략 당했음에 동의하며[···] 모든 유엔 국가들이 오스트리아의 독립국의 지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믿는다.”(Department of State 1946, 864-865).

오스트리아는 비록 나치 독일의 일부로 전쟁에 가담했으나, 위와 같은 연합국의 결정과 지지로 “나치 독일 침략의 첫 희생양”(Franklin et al. 1963, 1354)으로 인정받았다. 그 후 전쟁이 한창이던 1943년에 제1공화국 시절 선출되었던 정치인들이 구성한 새 임시정부가 승인되고, 종전 후, 1945년 11월 선거로 합법 정부가 다시 선출되어 오스트리아는 국권을 회복한다. 이후 10년간의 분할 점령기를 지나, 1955년 오스트리아 국가조약<sup>2)</sup> 체결로 1929년의 수정헌법(제1공화국 출범 후 1920년 제정)에 영세중립화 조항을 추가시킨 헌법이(CIA 1948) 복원되고, 독립국가가 재건되었다.

## 2. 오스트리아 분할 점령 방식의 협상과 결정 과정

1943년 모스크바 3상회담부터 1945년 분할점령 시점까지 오스트리아의 전후 처우와 분할 점령을 결정하게 한 핵심 사안은 독일과의 깊은 관계의 청산이다. 특히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오스트리아-독일 연합의 침략을 당한 소련은 두 국가의 재연합 방지를 통해 전쟁을 영구적으로 예방하고, 뿌리 깊은 나치 잔재의 청산과, 오스트리아 내의 나치 자산을 전쟁피해 배상금으로 제공하기를 강력히 주장하였다(Slany 1968). 이와 같은 이유로, 오스트리아는 병합 피해를 입은 국가로 규정

2) 약칭으로 오스트리아 국가조약이라고 부르나, 공식명칭은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오스트리아의 재건을 위한 국가조약”(State Treaty for the re-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and democratic Austria)이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병합 피해국들(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등)과 같이 바로 독립되지 않고 패전국 독일처럼 분할 점령의 결과를 맞게 된다.

이 오랜 논의와 협상의 정점은, 4강이 오스트리아를 점령하기 위해 1945년 7월에 맺은 두개의 협약인 오스트리아 통제기구협약(Agreement on the Machinery of Control)과 오스트리아 점령지역 및 비엔나 행정에 관한 협약(Agreement on the Zones of Occupations in Austria)에 잘 반영되어 있다(Beavans 1968a; 1968c). 두 개의 협약을 살펴보면, 오스트리아는 4강에 의해 4개의 지역으로 분할 점령될 것이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출범 할 때까지 통제기구가 모든 군사, 정치, 경제 결정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을 명시한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과제로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분리하고, 오스트리아 내에서 독일의 패배에 관한 선언문의 조항들(나치 자산 회수 등)을 시행할 것을 명시한다. 그러나, 1945년 11월 선거를 통해 4강의 승인을 받은 오스트리아 정부가 공식 출범하지만, 4강은 분할 점령을 끝내지 않는다. 대신 통제기구 협약 제14조에 의거 승인 정부 선출에 따른 별도 협정서를 서명(Beavans 1968b)하고 분할 점령 지역 간 이동 제한 철회와 같은 최소한의 조치 등만 취한 후 분할 점령을 지속한다.

그리고 10년 후 1955년에 4강이 철수 하면서 오스트리아와 맺은 오스트리아 국가조약의 서두와 이후 10개 조항에도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깊은 관계가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오스트리아는 1938년 독일에 강제 병합됐으며[...] 소련, 영국, 미국은 1943년 모스크바 선언으로 병합이 무효이며 오스트리아의 재건에 대한 의사를 확인했다[...] 본 조약을 통해 오스트리아의 병합과 독일의 일부로 참전한 일을 포함해 모든 남은 의문점들을 해결하고[...] 독일로부터 보호되기 위해 독일 평화조약에 오스트리아의 주권과 독립을 인정할 것과 오스트리아와 영토에 대한 모든 영토 및 정치적 주장을 포기할 것을 포함할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두 나라의 정치경제적 연합은 금지된다[...] 또한 직간접적으로 독일과 정치경제적 연합을 할 수 있는 어떠한 협정도 맺어서는 안

되며 오스트리아는 국토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범-독일권을 선전하거나 독일과 연합을 추구하는 단체의 존재와, 부활과 활동과, 행동을 예방해야 한다[...]"(UN 1955).

### 3. 4강의 오스트리아 중립화 협상 과정과 전략

#### 1) 중립화 협상 과정

오스트리아 국가조약이 본격적으로 추진 된 것은 1946년 4강의 외무장관 협의회에서 처음 거론된 후(Department of State 1953), 미국이 오스트리아 국가조약 초안을 작성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협상을 추진하여 1947년부터 조약 협의를 위한 4강의 대표단을(Deputies for Austrian Treaty) 구성하고, 1949년까지 구체적인 조약 초안의 내용을 협의해 나간다. 이미 첫 회의에서 조약의 제목을 결정하고 대부분의 내용을 합의 하는 등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조약 제35조, 즉, 오스트리아내의 독일자산 환수(소련이 전쟁배상의 일환으로 소유하고 있던 다뉴브 선박회사, 오스트리아 유전 등의 자산 환수 대가로 오스트리아가 천문학적 비용 지불하는 것)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최종 협상은 거듭 결렬되었다.

1953년, 소련이 오스트리아의 중립화 통일을 협상의 쟁점으로 공론화 시키고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1953년 6월 오스트리아 외무장관이 단독 행동으로 인도 수상을 통해 소련에게 중립화 통일 의지를 전달(Baehler et al. 1986b, 1017)하면서 오스트리아 국가조약의 체결의 핵심 쟁점 사항이 되었다. 1953년 7월 서방이 독일 통일과 오스트리아 조약체결을 논의하기 위해 4강 외무장관 회의를 다시 제안하고, 소련이 이를 받아들이며 1954년 1월 베를린 외무장관회담이 열리게 된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의 영세중립화 방안과 조약 초안의 제 35조에 대한 의견차이로 인해 최종합의를 하지 못하고 또 다시 결렬되었다.

1954년 베를린회담 협상 결렬로 협상 난항에 대한 국내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오스트리아 정부는 단독으로 소련 접촉을 시도한다

(Bahler et al. 1986b, 1017). 결국 1955년 4월, 소련과의 단독 협상으로 모스크바 선언문을 발표하며, 국가조약 체결 후 스위스식 영세중립화에 대해 합의한다(CIA 1955b). 또한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가장 의견 불일치를 이뤘던 오스트리아 내의 소련 소유 독일자산 환수 대가에 대해서는 1억 5천만 불을 6년에 나눠서 현물로 지급(CIA 1955b)한다는 구체적 사항 등에 합의한다. 이외에도 오스트리아는 정유시설 등의 환수 조건으로 여러 가지 현물(10년간 석유공급 등)을 소련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등 천문학적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최종 합의하였다. 그리고 한 달 뒤, 1955년 5월 오스트리아 국가조약이 체결된다. 조약 발효 후 1955년 10월 25일 마지막 점령군이 오스트리아를 떠나고, 다음날 오스트리아 정부는 영세중립화를 명시한 수정헌법을 발표하며 영세중립국이 되었다.

## 2) 중립화 협상 전략

위와 같은 중립화 협상 과정 뒤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의 치밀한 유럽안보관련 냉전 전략의 배경이 있었다. 그리고 영세중립화는 그 전략에 근거하여 허용되고 적용된, 오스트리아에게만 국한된 종류의 영세중립화였다. 표면적으로는 1953년 6월 오스트리아 외무장관이 단독 행동으로 인도 수상을 통해 소련에게 중립화 통일 의지를 전달하면서 오스트리아 국가조약의 체결의 핵심 쟁점 사항으로 공론화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훨씬 이전부터 소련과 서방은 이미 오스트리아를 배제한 채 각기의 냉전 정책대로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통일과 중립화를 타진하고 있었다.

미 국무부 자료를 분석해보면, 이미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작성된 미국의 안전보장회의 보고서 시리즈(National Security Council Report 이하 NSC)중 1950년 9월에 발표된 “미국의 대한정책-NSC 81/1”(Glennon 1976, 1201)에 한국의 영세중립화 통일을 통한 한국전쟁 종식이 미국의 정책으로 추진되면서 부터 소련의 독일 및 유럽국가 중립화 추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거론되었다.

그러나, 영세중립화 통일은 미국의 대한정책에 국한되어 있었고, 유럽에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혹은 다른 나라에는 적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였다(Slany et al. 1968, 1197). 이는 미국이 프랑스 및 영국과 함께 서유럽을 무장시켜 소련의 확산을 저지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유럽 방위공동체(European Defense Community)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독일의 재 무장화가 이 전략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군사협력에 동조하지 않는 영세중립화 정책은 독일에 절대 적용 되어선 안됐기 때문이다(Bernbaum et al. 1983, 168).

이후 1953년 8월, 미 국무부는 소련이 차기 회담에서 오스트리아의 중립화를 국가조약 조건으로 제시할 경우를 고려한 전략을 주 오스트리아 미국대사관에 요청하였다(Baehler et al. 1986b, 1052). 주 오스트리아 미국대사관은 소련이 오스트리아의 중립화를 국가조약 협상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회신하며,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중립화를 반대 하는 입장을 유지 하여야 하며, 만약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중립화를 받아들이는 대신, 하기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제시하였다. 오스트리아의 중립화는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에 참여 가능한 형태여야 한다. 오스트리아는 미국이나 서방으로 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는 것이 제한되지 않아야 하며, 4강의 보장으로 중립화가 추진되는 것이 아닌 오스트리아 단독의 발표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 추후 오스트리아의 주권을 훼손 할 수 있는 중립화 시행에 대한 조항은 조약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미국이 오스트리아 중립에 동의할 경우는 오스트리아 국가조약 초안의 제35조에 대한 수정의 대가로 되어야 한다. 소련이 오스트리아 중립화를 거론 할 경우 서방은 역으로 오스트리아 주변의 소련 위성국(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등)의 중립화를 제안하는 전략을 취하여 협상에 임할 것을 제안 하였다(Baehler et al. 1986b, 1052).

위 내용은 1953년 10월에 추진된 “오스트리아에 대한 미국의 목표와 정책-NSC 164/1”(Baehler et al. 1986b, 1080)이란 제목의 정책 문서에 반영된다. 이 정책에 의하면, 1953년 9월 오스트리아는 소련이

원하는 독일 자산 관련 협상을 받아들일 의지를 표명했으며, 만약 소련이 오스트리아의 중립화를 제안 할 경우, 오스트리아는 국가조약 체결을 위해 소련이 원하는 대로 더 양보하고 군사적 중립화까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으나, 미국은 영국 및 프랑스와 함께 중립화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언급되어있다. 또한, 소련이 제시하는 조건(중립화)으로 조약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 대비한 출구전략으로, 미국이 포용 할 수 있는 수준의 중립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미국은 오스트리아가 중립화 됐을 경우에 대한 미 합동참모본부의 군사전략상 의견을 요청하는데, 유럽의 안보 및 군사전략을 위해서 오스트리아의 중립화(비무장화)를 강하게 부정(Baehler et al. 1986b, 1109) 한다는 의견을 받는다.

1954년 베를린회담에서 미국이 우려해온 대로 소련이 오스트리아의 중립화를 협상 조건으로 제시하자, 미 국무장관은 1953년부터 준비해온 전략대로 오스트리아가 중립화 될 경우 강제될 수 없으며 오스트리아는 자유롭게 유럽 국가들과 경제, 정치, 문화 교류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고 표명한다(Baehler et al. 1986a, 1658). 결국, 소련과 협상은 다시 결렬 되었고, 일 년 뒤 1955년 4월 오스트리아는 소련과의 양자 협상으로 국가조약 체결 후 오스트리아가 단독으로 스위스식 영세중립화 방안을 공표하는 방식에 합의하고 모스크바 선언문을 발표한다. 모스크바 선언문이 발표되었을 당시 서방은 유감을 표시하며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CIA 1955a). 그러나, 결국 1955년 5월 서명된 최종 조약을 검토해 보면, 상당 부분 위에 언급된 1953년부터 수립한 미국의 대 소련 중립화 제안 대응전략 대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오스트리아의 영세중립화는 조약에 명시되지 않고 오스트리아가 단독으로 선언하는 형태로 되었으며 조약 초안의 제35조 관련 내용이 상당 부분 수정되어 최종적으로 서명된 오스트리아 국가조약에서는 제22조가 되었다.

#### 4. 오스트리아 정부가 영세중립화 통일을 선택한 이유

4강의 오스트리아 중립화 협상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오스트리아의 협상 주도권의 부재이다. 1946년 조약의 초안을 미국이 작성할 때도, 이후 10년 동안 4강의 대표단이 조약 내용을 협의 할 때도, 오스트리아의 직접 참여는 언급 되지도 고려되지도 않았다. 조약의 세부사항의 내용에 대해서, 미국은 오스트리아 정부에게 전달해 주기도 하고 의견도 듣는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미국과 서방의 유럽 전략에 기준한 협상을 추진하며 협상에서 오스트리아의 역할을 수동적으로 제한하려 했기에 오스트리아가 이에 항의하기도 했었다(Slany et al 1985, 293). 일례로, 회의 장소를 선정할 때도 미국과 서방은 오스트리아의 이해관계를 감안하여 의도적으로 비엔나를 회피 했었다(Baehler et al. 1986a, 938). 미 정부는 오스트리아가 협상을 재촉하는 것에 반감을 표하기도 했으며, 오스트리아는 본국이 협상 참여에 제한되는 것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Slany et al. 1985, 293).

이렇게 본국의 미래와 관련된 협상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4강의 협상은 지난 8년간 교착상태이며, 분할 점령은 지속되고 있었고, 분할 점령군의 주둔비용은 오스트리아 예산에 부담이 되고 있었다. 특히 오스트리아 동쪽지역을 점령중인 소련의 주둔비용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 소련은 1951년과 1952년, 연간 오스트리아 예산의 4.5%에 해당하는(미화 2억 1900만 불) 주둔비용으로 요구하였다(Baehler et al. 1986b, 786). 프랑스(미화 2억 2천만 불)와 영국(미화 2억 불) 또한 비슷한 수준의 주둔비용을 요구하였지만(미국은 점령 초기부터 주둔비용을 받지 않았다), 소련이 오스트리아 동쪽의 석유-정유시설과 산업시설은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련의 주둔비용까지 제공하는 것은 오스트리아 예산에 큰 부담이 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소련이 스위스식의 영세중립화 모델을 제시하였을 때, 오스트리아는 득실을 따지지 않고 바로 수락한 것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계속 분단국가가 될 것 같았기 때문”(Slany et al. 1988, 73)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 결과로 오스트리아가 처하게 될 경제적, 안보적 문

제, 즉 유럽경제연합에 가입이 불가하며(국가조약에 의거 독일과 어떤 직간접적 경제-정치적 연합이 불가하다) NATO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Baehler et al. 1986b, 786). 무엇보다도 소련이 전략물자 제공을 요청할 시에 이를 제공해야하는 중립국으로서의 의무 등은 미국이 짊어주기까지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Baehler et al. 1986b, 786).

오스트리아 정부는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점령군이 주둔을 끝내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 소련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주둔을 유지하고 오스트리아 동쪽의 점유시설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소련이 원하는 중립화라는 단어 하나를 추가하는 것은 금전적 대가에 대한 합의를 받아 점유시설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 주둔군을 내보내고 다시는 강대국의 점령국이 아닌 온전한 자유 독립국이 되기 위한 단순한 협상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었다(Baehler et al. 1986a, 1722).

#### IV. 오스트리아 영세중립화의 득과 실

사실상, 오스트리아가 영세중립화를 통해 본 이득은 1955년 중립화 통일 제안을 받아들일 당시 오스트리아 정부의 가장 큰 목표였던 분할 점령군을 내보내는 것과 자유 독립국가 지위의 회복 정도이다. 1955년 이후 오스트리아는 외세의 점령을 받지 않았으며 독립국가로서 지속 유지되고 있다. 소련의 붕괴 이후에는 유럽 연합에도 가입하고 중립국으로서 NATO 전략적 동반자 지위도 확보하게 됐다(중립국이기엔 회원국은 될 수 없다).

그러나 자유국가 지위의 회복과 점령군을 내보내는 조건으로 오스트리아가 치룬 금전적 대가는 적지 않았다. 그리고 소련과 협상을 통해서 이룬 국가조약의 독일자산 환수 금액에 대한 양보는 국가적 이익에 크게 부합하지 않는 합의로 보인다. 실제 1955년 4월 모스크바 선언을 통해 국가조약 초안의 제35조에 대한 소련의 큰 양보를 받아 오스트리아가 협상을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모스크바 선언 이

후 CIA(1955b)에서 작성한 분석 자료에 의하면, 소련이 결코 손해 보지 않는 협상을 했음이 드러난다. 소련이 분할점령을 시작하면서 오스트리아에서 점유했던 주요 독일자산은 상업기업, 석유-정유공장, 그리고 다뉴브 정박회사이다. 소련은 상업기업 환수 조건으로 1억 5천만 불 상당의 현물 지급을 허락하고, 석유-정유 공장 환수 조건으로 연간 1백만 톤의 원유공급을 기존 30년 제안에서 10년으로 줄여주는 한편, 다뉴브 정박회사 소유물 환수 조건으로 2백만 불을 지급 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CIA(1955b)의 자료에 의하면, 소련이 해외에 상업시설을 유지하는데 드는 높은 비용과 인건비를 감안하면, 1억 5천만 불 상당의 현물은 결코 손해 보는 거래는 아니며, 당시 추산으로 오스트리아의 원유 매장량이 12년 정도 남은 것을 감안하면 10년간 원유를 공급받는 것은 양보한 거래가 아니라고 분석한다. 또한, 다뉴브 정박회사 소유의 배들은 이미 소련의 위성 국가로 이동하였으며, 오스트리아에 남은 것은 정박 시설 정도이기에 2백만 불을 받고 소유를 돌려주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들을 볼 때 1955년 소련을 설득해서 이룬 통일이 과연 소련의 큰 양보에 의한 것인지, 오스트리아에게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 합의였는지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

기존 연구들과 같이 어떻게 오스트리아가 영세중립국을 이뤘는지 과정을 중심으로 본다면, 소련이 제안한 스위스식 영세중립화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국가조약을 체결 할 수 있었기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통일을 이룬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왜 오스트리아가 스위스식 영세중립국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한다면, 오스트리아의 통일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판단된다. 오스트리아는 자국만의 노력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주도적 위치에 없었으며, 그들의 노력의 실효성은 영향력이 제한되어있었다. 그렇기에 소련이 제시하는 스위스식 영세중립화 통일방안은 오스트리아가 거절 할 수 없는 방안이었다. 1955년, 오스트리아에게 “중립화”는 국가조약에 추가되는 하나의 항목으로서 소련과 외세의 주둔을 끝내고 자유 독립국가로 복귀하게 해주는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의미였다.

## V. 오스트리아와 한국의 분단의 공통점과 차이점

오스트리아와 한국의 제2차 세계대전 후 공통적으로 경험한 표면적인 역사적 현상 즉, 4강의 회담을 통해 독립국 지위를 보장 받은 것과, 1945년 종전 후 분할 점령이 시작된 사실 이외에는 공통점이 없다는 것이 본고의 결론이다. 그 이유는 앞서 논의한 오스트리아의 분할점령 체제 때문이다. 오스트리아의 점령은 1945년 이후 4강 분할 점령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오스트리아 통제기구 협약”과 “오스트리아 점령지역 및 비엔나 행정에 관한 협약”이라는 4강의 합의된 체제하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출범 할 때 까지’라는 제한이 명시된 점령이었다. 그리고, 1945년 11월 4강의 승인을 받은 공식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오스트리아는 자유 민주적 독립 국가가 될 자격을 갖춘 상태였다. 그러나, 이후 10년 동안 분할점령이 지속되었고, 오스트리아는 온전히 독립을 돌려받기 위하여 국가조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그 방법으로 열강들이 제시하는 제한점들을 모두 수용하는 오스트리아식 중립화 통일 방안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국의 분단은 조금 더 복잡한 양상을 가진다. 이는 1945년 전후 한국의 신탁통치를 원했던 미국과 소련이,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남과 북에 미-소군정이 각기 지원하는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후 1950년 6.25 전쟁을 거치면서 정전협정 체제라는 새로운 분단체제를 맞게 되고 이 체제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즉, 한국의 분단체제는 오스트리아의 4강 분할 점령 체제와는 다르다. 한국은 오스트리아와 달리 남북의 통합된 단일 정부가 없는 상황이며, 남과 북이 서로 전쟁을 하다 휴전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맺지 못하고 분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정전협정 서명국에 중국과 미국이 포함되어 있지만, 한국의 분단 해결과 통일의 주도권은 결국 남북에게 있다. 비록 현재는 전시작전권이 유엔군사령관겸 한미연합사령관에

게 있어 흡사 한국의 주도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시작전권 이관 후에는 북한과의 단독 협상을 통해 평화협정을 맺어야 하는 상황으로 발전 될 수도 있다.

## VI. 결론

만약 한국이 북한과 단독 협상을 통해 평화협정을 맺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오스트리아식 영세중립화 통일방안이 얼마만큼의 효용성을 가질 수 있을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정전협정 체제에서는 오스트리아식 영세중립화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앞서 논의되었듯 오스트리아식 영세중립화는 4강이 승인한 단일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점령군 체제를 종식시키고 온전한 독립을 돌려받기 위해 국가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 수단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이 냉전체제에서 각 진영의 안보체제에 부합하는 영세중립화 방안을 추진하였고, 오스트리아는 이를 수용하였다.

한반도에서 영세중립화를 추진하려면 누구를 가장 먼저 설득시켜야 하는지, 정전협정 서명국에 포함된 미국과 중국인지, 아니면 휴전중인 남북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한반도가 중립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서로 휴전중인 남북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북핵이 복잡하게 얽힌 한반도 상황에서 비핵화가 핵심 쟁점인데, 어떻게 북한과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로서는 통일을 준비할 한반도 단일정부가 수립이 되어 있지 않고,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결실에 가까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립화 주장은 성급할 수 있어 보인다.

또한, 오스트리아식 영세중립화 정책의 핵심은 점령군을 나가게 하는 것인데, 현재 한반도에 주둔하는 외국군은 유엔군사령관이자 한미연합사령관의 지휘하에 있는 미군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군의 철수를 요구해야 하는데, 미국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아시아 중심 정치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미군 철수 요구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우려된다.

오스트리아가 이뤄낸 통일과 통일 과정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제관계의 복잡다단성 이외에, 오스트리아는 영세중립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국가조약 협상 과정에서의 모멸적 상황들도 감내해야 했으며, 정상적이지 않고, 불합리한 경제적 비용을 관련국에 지불해야만 했으며, 영세중립화 지위를 가지게 되어서도 자국의 안보에 대한 주권을 일정부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귀착되었다. 만약, 한국이 영세중립국 지위를 선택한다면 현 정전협정을 대체하게 될 남북평화조약 서명국들인 미국과 중국에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는 영세중립화 통일로 완전한 주권 회복을 달성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오스트리아 통일 직후, 저명한 오스트리아 출신 국제법학자 요제프 쿤츠(Josef Kunz)가 검토한 국제법상 오스트리아 영세중립화의 의미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Kunz 1956). 오스트리아의 영세중립화는 국가조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다. 중립국 혹은 영세중립국은 자위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전쟁에 가담하지 않을 것을 자국의 법적 의무로서 명시한 국가이다(Kunz 1956, 418). 영세중립국의 공식 개념이나 지위는 국제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조약, 협정서, 혹은 국제사회에서 구속력이 있는 선언으로 국제법상 구속력을 가지는 지위가 획득된다(Neuhold 1979, 285). 만약 한 국가가 구속력 있는 선언이 아닌, 스스로 영세중립국을 천명 할 경우 그 지위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되지 않는다(Kunz 1956, 418). 영세중립국은 국가 간에 합의를 통해서 인지되고 만들어지는 지위이며 합의한 서명국 모두의 동의가 있을 시에만(협정서나 조약의 수정이나 파기를 통해서만) 그 지위가 변경 되거나 없어질 수 있다(Kunz 1956, 418). 비록, 1955년 4월 모스크바 선언이 문서상 효력을 가지지만, 이는 소련과 오스트리아만의 구속력이며 미국, 영국, 프랑스는 배제되어있다. 원칙상 스스로 발표하는 영세중립화 선언은 효력이 없지만, 오스트리아의 경우 영세중립화를 선언한 후 외교

관계를 맺은 각국에 통보했을 때 모두 인지하였다(Koeck 1973). 또한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4개국이 인지한 선언이기에 다행히 국제조약 등의 문서로 합의한 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는 영세중립국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영세중립국으로 인지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가 오스트리아 안보를 굳건히 지켜주는 도구가 되지는 못했다. 영세중립화는 주권, 특히 군사동맹 및 안보에 대한 주권을 상당부분을 포기하는 것이며, 이는 냉전체제에서의 미국 주도 민주주의 진영의 오스트리아 영세중립화를 반대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한다. 오스트리아는 국가조약 제13조 특수무기에 대한 조항에 명시한 대로 미사일, 어뢰, 잠수함, 공격기, 30km이상 발사 가능한 총기, 무기로 사용 가능한 생화학물질을 소유하면 안된다(UN 1955, 235). 또한, 오스트리아 헌법에 자유의지로 영세중립화를 선언하며, 앞으로 어떠한 군사동맹을 맺지 않고 외국군의 주둔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했기에 NATO 회원국이 될 수 없으며, 1960년대 유럽공동시장(European Common Market)가입을 추진했을 때 영세중립국 지위를 빌미로 소련의 반대에 부딪혔었다(Gehler 2005, 128). 1958년 레바논 위기 때는, 미군기의 오스트리아 영공 통과 비행에 대한 소련의 압박으로 오스트리아와 미국의 관계가 경색 됐었고(Gehler 2005, 129), 영세중립화 지위로 인해 오히려 자국의 안보와 영토 그리고 상공에 대해 스스로의 결정만으로 지킬 수 없음을 통감하였다(Gehler 2005, 130).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영세중립화 검토 진행시의 국제법상 의미는 본고의 논지를 벗어나기 때문에 깊이 논하지 않지만, 영세중립화를 포함한 한국의 통일 방안이 검토되려면, 본고에 언급된 오스트리아 사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이다.

한 국가의 분단 상황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방법론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오스트리아식 통일 사례를 한반도 통일 방안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을 포함한 보다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학문분야에 걸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본고에서 다루지

않은 미국 이외의 열강들, 영국/소련/프랑스 관점에서, 오스트리아 영세중립화 진행 과정에서의 논의 내용과 입장 및 의견들에 대한 추가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 &lt;참고문헌&gt;

- 김홍섭. 2020. “오스트리아 모델: 친서방 영세중립의 성립과 발전.” 『독일언어문학』 제88집.
- 박정원. 2007. “한반도 통일모델의 탐색 중립화통일론의 적용가능성.”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 박태균. 2019. “미국의 대한정책을 통해 본 한반도 중립국화 방안.” 『한국과 국제정치』 제35권 3호.
- 서원호. 2018. “인터뷰 플러스: 영세중립 평화통일로 한반도 평화 제도화하자.” 『서울신문』 (5월 15일).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516035001>(최종검색일: 2021/1/15).
- 이 경. 2011. “분단국의 통일사례 비교.” 『대한정치학회보』 제18집 3호.
- 정미영. 2010. “오스트리아 중립화 문화가 남북한에 주는 함의와 교훈.” 『남북문화예술연구』 제6호.
- Baehler, David M., Bernbaum, John A., Sampson, Charles S. 1986a.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Germany and Austria, Vol 7, Part 1*.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Baehler, David M., Bernbaum, John A., Sampson, Charles S. 1986b.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Germany and Austria, Vol 7, Part 2*.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Beavans, Charles I. 1968a. “Control Machinery in Austria.” Beavans, Charles I comp. *Treaties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776-1949*.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s://www.loc.gov/law/help/us-treaties/beavans.php>(Accessed 2021.2.2).
- Beavans, Charles I. 1968b. “Control Machinery in Austria: Allied Commission.” Beavans, Charles I comp. *Treaties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776-1949*.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s://www.loc.gov/law/help/us-treaties/beavans.php>(Accessed 2021.2.2).
- Beavans, Charles I. 1968c. “Zones of Occupation in Austria: Administration of Vienna.” Beavans, Charles I comp. *Treaties and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776-1949*.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s://www.lo>

- c.gov/law/help/us-treaties/bevans.php(Accessed 2021.2.2).
- Bernbaum, John A., Rose, Lisle A. and Sampson, Charles S. 1983.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2-1954, Western European Security, Vol. 5, Part 2*.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CIA. 1948. "Situation Report 16: Austria."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s://www.cia.gov/readingroom> (Accessed: 2021/2/2).
- CIA. 1955a. "Current Intelligence Bulletin, April 17." <https://www.cia.gov/readingroom>(Accessed: 2021/2/2).
- CIA. 1955b. "Current Support Memorandum: Nature and Implications of the Recent Soviet Economic Proposals Concerning the Austrian State Treaty, April 26." <https://www.cia.gov/readingroom>(Accessed: 2021/2/2).
- Department of State. 1946.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Vol.15, No. 384.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Department of State. 1953. *European and British Commonwealth Series 43*.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Franklin, William M. and Perkins E.R. 1963.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1943, General, Vol.1*.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Gehler, Michael. 2005. "From Non-alignment to Neutrality." *Journal of Cold War Studies*. Vol. 7, No. 4.
- Glennon, John P. 1976.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Korea, Vol 7*.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Koeck, Heribert Franz. 1973. "A Permanently Neutral State in the Security Council."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6, No. 2.
- Kunz, Josef L. 1956. "Austria's Permanent Neutrality."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50, No. 2.
- Neuhold, Hanspeter. 1979. "Permanent Neutrality and Non-alignmen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dia Quarterly* Vol. 35, No. 3.
- Perkins, E. Ralph, Gleason, S. Everett, Gleason. 1966.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1944, General, Vol I. Foreign Relations of the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Slany, William Z., Bernbaum, John A., Landa, Ronald D. Sampson, Charles S., Lee, Joan, Stauffer, David H. and Rose, Lisle A. 1985.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1, Europe: Political*

- and Economic Developments, Vol. 4, Part 2.*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Slany, William Z. and Sampson, Charles S. 1988.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5-1957, Austrian State Treaty: Summit and Foreign Ministers Meetings, 1955, Vol. 5.*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Slany, William Z., Glennon, John P., Houston, Douglas W., Sappington, N.O. and Kent, George O. 1968.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1945, European Advisory Commission, Austria, Germany, Vol.3.* Washington: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Steinger, Rolf. 2002. "12 November 1918-12 March 1938: The Road to the Anschluß." Steininger, Rolf, Bischof, Günter and Gehler, Michael eds. *Austria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 UN. 1955. "Treaty Series: State Treaty (with annexes and maps) for the re-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and. democratic Austria." Vol. 217, No. 2949. <https://treaties.un.org>(Accessed: 2021/2/2).

투고일 : 2021년 3월 12일 . 심사일 : 2021년 3월 24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4월 7일

\* 박수희는 Boston University 심리학 전공 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학 석사 취득 및 박사를 수료하였다. 대표논문으로는: "다문화-다인종 시대에 따른 한국 안보가치의 적합성 분석: 초중고 가치 교육과정에 기초한 문제점 고찰"(2011, 석사 논문)이 있고, 현재 미국의 대한-대오스트리아 통일정책 방향의 비교분석에 관한 분야로 국제학 박사학위 논문을 진행 중이다.

<Abstract>

## Reconsideration on the Studies of Adaptability of Austrian type Permanent Neutrality Reunification in Korea

Soohee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Despite the similarities on the regaining of independence and the subsequent partitioned allied-occupation at the end of World War II, Korea and Austria have developed into seemingly opposite circumstances: prolonged partition and reunification. Such divergence made Austrian type neutrality reunification an important research topic in the Korean Academia. Nevertheless, the previous researches focused on *how* Austria achieved permanent neutrality reunification, but not on *why* Austria chose permanent neutrality policy. Therefore, this study assessed the reasons why Austria chose neutrality policy, using the diplomatic papers of the United States and declassified documents of the CIA.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Austrian type neutrality was not a mere neutrality policy, but a special policy designed and applied to Austria by the occupational powers during the Cold War. Therefore, it is argued that the Austrian type permanent neutrality reunification strategy is less likely to be adaptable as an unification method to Korea.

**Keywords** : Korea, Austria, permanent neutrality, reunification, partitioned allied-occupation